

시 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433	주무관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결재일자	2013.6.18.	박준영	이원목	박영섭	윤준병	06/18 김상범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김준섭
방침번호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팀장				전재명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3. 6.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type="checkbox"/>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I 발의 개요

조례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1340호, '13. 5. 23. 교통위원회 회부)

발의의원 : 김용석(민주당, 도봉1) / 찬성의원 16명

제안이유

- 어린이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

주요내용

-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4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 할 수 있음(제6조)
- 시장은 해당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제7조)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제8조)
-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 재정지원(제11조)

□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 광역(7) 및 기초(15) 자치단체 조례 운영중
- 공통사항(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재정지원) 및 특이사항(어린이 통학로 범위,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등으로 운영

구분	대표 자치단체	제정일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12. 11. 6.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부산광역시	'08. 11. 5.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경상북도	'12. 4. 9.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인천광역시	'11. 10. 24.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기초자치단체	광명시	'12. 6. 1.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고양시	'09. 12. 18.	어린이 통학로 범위,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서울시 중랑구	'13. 5. 23.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등하교 지도,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서울시 광진구	'09. 10. 9.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등하교 지도, 어린이 안전교육, 재정지원
	안동시	'09. 1. 9.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재정지원
포항시	'09. 10. 13.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재정지원	

※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대전, 광주, 익산, 구리, 전주, 김해, 나주, 목포, 보령, 성남, 순천

II 조례(안) 검토

1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적 법

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집 등의 시설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 통행속도 제한(시속 30km아내), 운전자의 적극적 안전 운행 등 안전한 통학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단, 어린이 통학로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 적 정

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07년 59건→'11년 127건 / 경찰청 내부자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市 교통정책 방향과도 부합함
-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지도사, CCTV 설치 등 주요 사업이 기 시행중에 있어 급박한 시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조례안 내용 검토

1 통학로의 정의 → 일부 수정

조례안 제2조 6호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를 말한다

수 정 안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 주요 통학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교통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 외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통로가 있을 수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 주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500m
- 통학로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호구역 밖의 주요 통로까지 관리범위에 넣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나
 - 통학로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내실있는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학로 정의 확정이 필요함

-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통로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행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통학로 정의 수정

② 기본계획수립 등 → 일부 수정

조례안 제4조

-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정안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학원 등 통학로가 설치되는 주요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 유치원 857, 초등학교 591, 특수학교 29, 학원(중·고등포함) 13,477개소('11년)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포함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013 학생 생활교육 계획)
- 따라서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통학로 안전의 주요 책임기관의 장인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③ 실태조사 ➔ 일부 수정

조례안 제5조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안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조항이 '제5조'로 오기되어 '제4조'로 수정
- 기본계획에 반영할 현황자료,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구청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함이 타당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삭제

조례안 제8조

-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현장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부분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근거법 : 도로법 시행령
- 적용대상 : 도로를 점용하는 모든 공사
- 교통소통대책의 주요 내용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진방법 :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월1~2회)
- 벌칙사항 : 해당 공사시행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관리계획 요구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 1,633개(13.3월)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모든 공사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효성있는 조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태·현황은 상시적으로 조사·관리되고 있어야 됨
-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⑤ 재정지원 ➔ 일부 수정

조례안 제11조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학교,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자치구를 통해 집행·관리되고 있어, 재정지원도 기본적으로 자치구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한 경우 자치구 외의 기관 등에도 세부여건에 따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⑥ 기타사항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발의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12.12.3 / 남재경의원), 「서울특별시 유치원 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13.6.17 / 이지현 의원)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

III 종합 의견 → 수정 의결

-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외의 어린이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함
- 다만, 조례안 중 모호한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요 행위주체들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IV 향후 계획

- 발의자 및 교통위원회 방문 수정(안) 설명
- 조례(안) 발효시 시행규칙, 계획 수립 준비

참고자료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金容錫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
----------	------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23일
 발 의 자 : 金容錫의원 (1명)
 찬 성 자 : 이정찬·김희전·김정태·김창수
 정세환·오승록·전철수·박운기
 공석호·이명영·김명신·한명희
 윤명화·이상호·이정훈·김선갑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가.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시장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시장은 이 조례의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별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또는 학교,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불필요
발의의원	김용석	발의 동기	민원해결/자체발굴/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적법
주관부서	보행자전거과	민원갈등가능성	있음/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해당없음
상임위	교통위원회	조작인력 변경여부	변경/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강화/해당없음
		관련부서 협의	완료/진행중
		부서 검토의견	수용/수정의결/보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제4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 할 수 있음(제6조) ○ 시장은 해당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제7조)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제8조) ○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 재정지원(제11조)
주요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의 정의 → 일부수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호구역 밖의 주요 통로까지 관리범위에 넣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내실있는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학로 정의 확정이 필요함 ○ 기본계획수립 등 → 일부 수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포함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2013 학생 생활교육 계획) - 따라서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통학로 안전의 주요 책임기관의 장인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검토 사항	<p>○ 실태조사 ➡ 일부 수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조항이 ‘제5조’로 오기되어 ‘제4조’로 수정 - 기본계획에 반영할 현황자료,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구청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함이 타당 <p>○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의 근거법인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관리계획 요구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 1,633개(’13.3월)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모든 공사현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효성있는 조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태·현황은 상시적으로 조사·관리되고 있어야 됨 -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 재정지원 ➡ 일부 수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자치구를 통해 집행·관리되고 있어, 재정지원도 기본적으로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한 경우 자치구 외의 기관 등에도 세부여건에 따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p>○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 발의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12.12.3 / 남재경의원), 「서울특별시 유치원 등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13.6.17 / 이지현 의원)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함
	향후 계획
부서 의견	수정의결